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당사(자녀나 양육, 형제자매부양)국가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5.07.16(수)	2025.07.17(목)	2025.07.18(금)	2025.07.24(목)	2025.08.05(화) ~ 2025.08.07(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 용인시 차인구 마명동 607-1번지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장점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점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부(국·민·부)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본 주택은 수도권 비수도권지역 및 비청약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본 및 그 세대에 속한 모든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자의 재산상황을 허용하는 제도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또는 본 주택의 해당구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민·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민·부(국·민·부)에서 추천한 본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조치 및 비청약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본 및 그 세대에 속한 모든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자의 재산상황을 허용하는 제도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또는 본 주택의 해당구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16874호(2025.07.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용인시 차인구 양지연 방리 713번지 일원(양지자구 1BL)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3개동 총 997세대
- [특별공급 510세대(기아차주인 91세대, 다자녀가구 98세대, 신혼부부 210세대, 노부모부양 29세대, 생애최초 82세대) 포함] 및 부대·복합시설
- 입주시기: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권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의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5010189	01	084.9622A	84A	84.9622	26.4785	111.4407	61.2477	172.6884	46.9510	534	53	53	122	16	48	292	242	26
		02	084.8742B	84B	84.8742	26.4586	111.3328	61.1842	172.5170	46.9024	385	38	38	88	11	34	209	176	14
		03	123.8242	123	123.8242	38.5833	162.3625	89.2628	251.6253	68.2466	78	0	0	2	0	9	69	3	
		합계										997	91	98	210	29	82	510	487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통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한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동등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결과와 또는 공공지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가권 별도 구역이 불가하므로 모든 구역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결과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1, 2, 3층)는 각호의 최하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미시각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에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622A	084.8742B	123.8242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12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의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5%)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기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6.03.25	26.08.25	27.02.25	27.09.27	28.02.25	28.07.25	입주자청정일
84A	101, 102, 103, 104, 105, 109, 110동(1, 4호)	1층	19	101,883,600	377,116,400	-	479,000,000	5,000,000	18,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2층	26	101,883,600	390,116,400	-	492,000,000	5,000,000	19,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3층	26	101,883,600	395,116,400	-	497,000,000	5,000,000	19,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4층	26	101,883,600	400,116,400	-	502,000,000	5,000,000	20,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5~10층	156	101,883,600	412,116,400	-	514,000,000	5,000,000	20,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1~20층	188	101,883,600	416,116,400	-	518,000,000	5,000,000	20,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84B	101, 102, 103, 104, 105, 109, 110동(2, 3호)	21층 이상	93	101,883,600	424,116,400	-	526,000,000	5,000,000	21,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층	14	101,778,200	377,221,800	-	479,000,000	5,000,000	18,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2층	14	101,778,200	390,221,800	-	492,000,000	5,000,000	19,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3층	14	101,778,200	392,221,800	-	497,000,000	5,000,000	19,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4층	14	101,778,200	400,221,800	-	502,000,000	5,000,000	20,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5~10층	84	101,778,200	412,221,800	-	514,000,000	5,000,000	20,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23	106동 (1, 2, 3호)	11~20층	135	101,778,200	416,221,800	-	518,000,000	5,000,000	20,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이상	110	101,778,200	424,221,800	-	526,000,000	5,000,000	21,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층	2	148,485,700	475,013,000	47,501,300	671,000,000	5,000,000	28,55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34,850,000
		2층	3	148,485,700	479,376,636	49,137,664	689,000,000	5,000,000	29,45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41,150,000
		3층	3	148,485,700	497,740,273	49,774,273	696,000,000	5,000,000	29,8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43,600,000
		4층	3	148,485,700	504,103,909	50,410,391	703,000,000	5,000,000	30,15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46,050,000
		5~10층	18	148,485,700	519,558,455	51,955,845	720,000,000	5,000,000	31,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11~20층	30	148,485,700	525,013,000	52,501,300	726,000,000	5,000,000	31,3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54,100,000
		21층 이상	19	148,485,700	534,103,909	53,410,391	736,000,000	5,000,000	31,8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257,600,000

2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번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청약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 기준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 통장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행렬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공주택법」 p.2 참조) · 기관주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행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주전예외: 국가유공자 및 청거주주 소유자(다세대주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에만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에만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나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회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 <th>구분</th><th>용인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th>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구분	용인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청약 통장 자격 요건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산정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1순위 가정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정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정제 당첨 시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정제 청약이 불가함.																						
비고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22025-101-0000800	343,998,8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변동종료일까지 (사용상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불사실상환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5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에이치엔건축사사무소	(주)신원테크엔지니어링	(주)골드이엔지	해성종합기술(주)
감리금액	3,522,018,500	904,149,000	794,712,800	77,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 사업관계자 및 시공업제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업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아심라	에스엠에스티(주)	에스엠에스티(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2834	124311-0028914	124311-0028914
주소	경기도 이천시 애연정로 126(장전동)	경기도 이천시 애연정로 126(장전동)	경기도 이천시 애연정로 126(장전동)